

#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(전면) 개정한다.

##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

제1조 (목적)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기자재의 공동실습을 통하여 교수·학습 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(이하 '실습소'라 한다) 를 둔다.

제2조 (위치)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.

제3조 (업무) 실습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산업기계 공동실습교육
2. 실업계교원의 농업 또는 공업관련 특별연수
3. 기타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

제4조 (소장 등) ①각 실습소에 소장과 부소장을 두며, 소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.

②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하부조직) ①각 실습소에 연수과와 서무과를 두고 연수과장은 설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중에서 임명하되 주임교사로 보하며 서무과장은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겸임한다.

②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임명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실기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우선적으로 임명하여야 한다.

제6조 (사무분장) ①연수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학생교육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

2. 실과교원연수에 관한 사항
3. 교재개발 및 교육내용 편성에 관한 사항
4.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
5. 기타 실습교육 및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

②서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인사·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
2. 예산편성·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물품구매·출납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

제7조(정원배치) 실습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수당) 실습소의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예산)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기타 실습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③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는 이 조례에 의한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 본다.

< 별표 >

###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

명 칭	설 치 학 교	위 치
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	청주농업고등학교	충청북도 청주시 내덕 1동 322
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	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	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79